



프랑스의 무국적자 결정 및 처우에 대한 제도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팀

프랑스는 1955년 1월 12일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de New-York du 28 septembre 1954 relative au statut des apatrides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에 가입하고, 1960년 3월 8일 비준하였다.¹⁾

가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255건)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³⁾ 이 사무국은 2007년 중 173건의 신청서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판단에서 29.5%에 해당하는 51건만이 무국적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I. 프랑스에서의 무국적자관련 현황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에 따르면,²⁾ 지난 2007년에는 201건의 무국적자 지위 신청이 있었다. 종전 150건 이하의 수치가

II. OFPRA(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⁴⁾

프랑스는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 설립에 관한 법률(Loi portant création d'un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1) Décret n° 60/1066 du 4 octobre 1960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relative au statut des apatrides ouverte le 28 septembre 1954 (J.O. du 06/10/1960).

2) OFPRA, le rapport annuel 2007, 2008. 4., p. 21.

3) 신청자의 출신 지역을 보면 유럽이 가장 많고(60%), 아시아(29%), 아프리카(10%)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ibid*).

4)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FPRA 홈페이지(www.ofpra.gouv.fr) 참조.

des réfugiés et apatrides)」⁵⁾ 제1조에 의하여, 1952년에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OFPRA;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⁶⁾ 을 설립하였다.⁷⁾ OFPRA는 프랑스 외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법인격과 독립 재산제 및 행정자율권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이며(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 제721조의1), 난민 및 무국적자의 자격 인정 및 보조적 보호(protection subsidiaire)의 승인에 관하여는 프랑스 국내법과 유럽 및 국제 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III. 무국적자(apatride) 자격의 인정

프랑스는 1960년 이후부터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뉴욕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무국적자를 위 협약 제1조에 따라 '어떠한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자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1954년 뉴욕 협약의 무국

적자 자격배제조항(제1조의2)에 따른 자는 무국적자로 인정될 수 없다.⁸⁾ 그리고 1951년 제네바 협약과 달리, 뉴욕 협약은 무국적자의 자격정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54년 뉴욕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국적자의 정의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국적자 자격은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⁹⁾

또한 프랑스 판례는 이 배제조항에 '무국적자 지위를 신청한 자가 임의로 원래의 국적을 포기하고, 또한 자유롭게 그 국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¹⁰⁾ 즉, 판례는 자신의 원래의 국적을 고의적으로 포기한 자는 1954 뉴욕 협약의 의미에서 무국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¹¹⁾ 이러한 고의적 국적포기는 무국적자 지위의 철회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부정행위로 구성하는 것이다.¹²⁾ 그러나 프랑스 국사원은 국방의무를 거부하기 위하여 원래의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무국적자의 지위를 승



5) Loi n° 52-893 du 25 juillet 1952 portant création d'un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6) 이하 OFPRA라 한다.

7) OFPRA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난민'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8) (무국적자 협약 제1조의2) - 'HCR이외의 UN 기구'의 보호 또는 원조를 받는 자;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그 국가의 국적 소유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 또는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기 이전 그 국가 밖에서 일반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UN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한 죄'를 저지른 자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자

9) JurisClasseur Civil Code ; Art. 11 : CONDITION DES ÉTRANGERS EN FRANCE, 1996, n° 114.

10) T. adm. Strasbourg, 31 mars 1994, Dragotel c/ OFPRA : D. 1994, somm. p. 246, obs. F. Julien-Laferrrière.

11) TA Orléans, 20 oct. 1992, *Caldanuta* : Rec. CE 1992, p. 986.

12) JurisClasseur Administratif ; ÉTRANGERS, 2008, n° 453.

인하였다. 즉, 이 신청자가 무국적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의 모국이 행하는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반인류적 또는 부당한 처우 등의 위협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 지위를 인정하였다.¹³⁾

IV. 무국적자 지위 인정절차

외국인의 입국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은 무국적자의 인정 등에 관하여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침묵은 무국적자 지위를 신청한 자에게 임시 체류권 체류에 관한 권리(droit de séjour provisoire)가 박탈되는 것으로 귀착될 수 있다. 즉, 관할 도청은 무국적자 지위를 신청한 자의 체류를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제 출국 절차를 실행할 수도 있다.¹⁴⁾

1) 무국적자 지위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무국적자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무국적자 신고서를 난민 및 무국적자 보

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OFP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은 무국적자 자격 인정절차에 관해서도 역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¹⁵⁾ 무국적자 자격 신청서를 받은 OFPRA는 관련 당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 둘째, 무국적자 지위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서에 대한 심리는 무국적자 여부에 관하여 충분하고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OFPRA는 무국적자 지위 신청자의 국적에 관하여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면담을 하며, 관련 국가의 국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조사를 한다. 이 경우, OFPRA는 프랑스에 주재하는 '관련될 수 있는' 국가들의 영사관에 의견청취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셋째, 무국적자 지위 인정은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장이 결정한 다. 무국적자 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제 L.721조의2 및 제L.721조의3에 따라 OF-



13) CE, 29 déc. 2000, n° 216121, *préfet de police c/ Sarigul* : JurisData n° 2000-061894 ; RFD adm. 2001, p. 268.

14) JurisClasseur Administratif, *op., cit.*, n° 456.

15) 인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FPRA 홈페이지 참조.

PRA의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는다. 즉, 프랑스는 난민과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프랑스의 소속민(ressortissants)으로서 프랑스 법률을 적용한다.¹⁶⁾

- 2) OFPRA가 무국적자 지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비호권에 관한 국가법원(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이 아닌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법원에 기각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17),18)} 이 경우, 행정법원의 판결은 행정항소법원의 항소 대상이 되며,¹⁹⁾ 또한 국사원의 파기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²⁰⁾ 주의할 것은, 난민청원위원회(Comission des Recours des Réfugiés)는 무국적자의 지위 신청을 위해서는 권한이 없다.

정치적 비호 신청자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와는 달리, 무국적자 지위 신청에 관한 행정판결에

대한 항소는 정지효력이 없다. 따라서 무국적자 지위를 신청한 자가 관할 도청의 추방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행정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도, 관할도청은 신청자의 추방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²¹⁾

V. 무국적자에 대한 처우

무국적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의 개인에 관한 지위(혼인, 이혼 등)와 행정에 관한 지위(체류, 통행권 등)는 프랑스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1. 무국적자의 체류에 관한 권리

무국적자의 지위를 취득한 무국적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은 유효기간이 1년인 '개인가정생활자(vie privée et familiale)' 일반체류증²²⁾을 교부받는다(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 제L.313조의11 제10호). 이 일반체류증을



- 16) Mariel Revillard, Droit international privé et communautaire : pratique notariale, 6^e édition, 2006, n° 1003.
 17) CNDA, 25 mai 2005, n° 518748, A. - CE, 30 déc. 1996, n° 162100, Thammi : JurisData n° 1996-051312; Dr. adm. 1997, comm. 97. - CE, 30 déc. 1996, n° 154535, préfet Loiret : JurisData n° 1996-051313; Dr. adm. 1997, comm. 97.
 18) 행정재판은 완전심리소송(recours de pleine juridiction)이 아닌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pouvoir)이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는 이행조치 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CE, 22 juill. 1994, n° 144859, Jabl : Dr. adm. 1994, comm. 539, note F. Scanvic).
 19) 2007년, 75건의 항소가 행정법원에 의해 판단되었으며, 행정항소법원은 11개의 거부 판결을 확인하였다(le rapport annuel 2007, op., cit.).
 20) JurisClasseur Administratif, op., cit., n° 460.
 21) ibid., n° 461.
 22) 목적별 체류 허가, 최고 1년, 갱신 가능(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 제L.313조의1 ~ 제L.313조의14).

교부받은 무국적자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받게 된다(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 제L.313조의 12조 제1항). 프랑스에서 적법하게 3년 이상 거주를 증명한 경우, 무국적자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 (carte de résident)²³⁾을 부여받을 수 있다(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 제L.314조의 11 제9호).

2. 법적 보호

OFPPA는 무국적자의 법적·행정적 보호를 수행한다(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 제L.721조의2). 즉, OFPPA는 무국적자에게 사적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며, 이에 필요한 증서를 증명한다(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에 관한 법 제L.721조의3).

3. 출국조치

1954년 뉴욕 협약 제31조는 난민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으로, 국가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무국적자의 출국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 제L.511조

의4는 강제출국조치에 대하여 무국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프랑스 영토의 출국에 관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전 제L.51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²⁴⁾ 실제 형벌 및 반인류적 또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따르는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출국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²⁵⁾ 또한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의 판결은 1954년 협약 및 무국적자 지위에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효력을 고려하여, 무국적자인 자녀의 부모는 강제추방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²⁶⁾

백 명 선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23) 10년 유효, 갱신 가능, 프랑스 내 직업 및 근로 활동 가능(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비호권에 관한 법 제L.314조의1 ~ 제L.314조의 15).

24) Art. L.513-2 제2항 「외국인은 그의 생명 또는 자유에 위협을 가하거나 1950년 11월 4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수호를 위한 유럽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반한 처우를 처하게 하는 국가로 추방될 수 없다」

25) JurisClasseur Administratif, *op. cit.*, n° 466.

26) CE, *sect.*, 9 nov. 2007, n° 261305, C. : JurisData n° 2007-072625.